

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

규정 · 소관 건강증진센터 · 현행 규정

개정 2026. 5. 4. · 시행 2026. 5. 4. (현행 판)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64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7:09:24 ·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생활건강증진원 산하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을 위하여 설치한 건강증진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-05-04>

제2조(위치)

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생활건강증진원 부속기구에 속한다.

제3조(기능)

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. <개정 2026-05-04>

1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2.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
3.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4.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조직)

- ① 건강증진센터장(이하 "센터장"이라 한다)은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. <개정 2026-05-04>

제2장 운 영

제5조

(원문에 제목·본문이 없습니다)

제6조(건강증진센터의 직원 및 업무)

건강증진센터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직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6-05-04>

1. 센터의 책임자는 센터장이 겸임한다.
2. 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를 둔다.
3. 간호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.
4.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업무 및 건강관련에 대한 상담을 시행한다.

제3장 보 칙<신설: 2026.5.4.>

제7조(보고)

센터의 주요 업무 및 운영 결과는 생활건강증진원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<신설 2026-05-04>

제8조(세칙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원 운영 규정에 따른다.
<신설 2026-05-04>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